

#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3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3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4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3. 17) 상정

○ 제14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3. 17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심 명 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8423호 2007. 5. 11. 공포·시행) 및 「지방재정법」(법률 제7663호, 2005. 8. 4. 공포·2006. 1. 1. 시행)이 각각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117조제2항 → 제126조제2항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5조제2항 → 제9조제2항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### 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

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#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22호
의결 년월일	2008. 3. 20 (제142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3. 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8423호 2007. 5. 11. 공포·시행) 및 「지방재정법」(법률 제7663호, 2005. 8. 4. 공포·2006. 1. 1. 시행)이 각각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117조제2항 → 제126조제2항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5조제2항 → 제9조제2항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
##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”를 “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제2항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본 특별회계”를 “특별회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예에 의한다”를 “예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</b></p>	<p><b>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</b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<u>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제2항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<u>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· 2. (생략)</li> <li>3. <u>본 특별회계</u>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 수입금</li> <li>4. <u>기타</u> 수입금</li> </ol>	<p>제3조(세입) -----<u>다</u> <u>음 각 호</u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<u>특별회계</u>----- -----</li> <li>4. <u>그 밖의</u>-----</li> </ol>
<p>제4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<u>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및 <u>기타</u> 제비용</li> <li>2. <u>기타</u>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</li> </ol>	<p>제4조(세출) -----<u>다</u> <u>음 각 호</u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-----<u>그 밖의</u>-----</li> <li>2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li> </ol>
<p>제5조(준용)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<u>예에 의한다.</u></p>	<p>제5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<u>예에 따른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6조(시행규칙) -----<u>시행에</u> ----- -----.</p>